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신 남 동)

□ 제안이유

- 2004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5년 한해에만 인상 요인이 94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순손실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 2004년 기준 평균 37퍼센트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요금현실화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하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37퍼센트 인상하고, 업종간 누진 단계를 일반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조정함.

(안 별표 1)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하수도 사용요금의 금번이전에 인상한 시기는 ?	○ 2004년도에 인상하였음.
○ 37%를 금번에 인상하는 사유는 ?	○ 2005년도 인상요인이 94%이상 발생하였고, 상급기관의 권고와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부분의 100% 수준까지 일괄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금번에 37%를 인상하고 이후 년차적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요금 부과 기준은 ?	○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도 발생량으로 계산하고 있음.
○ 하수도 요금 37%의 인상폭은 시민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	○ 우리시 세대수의 약 83% 정도가 가정에서는 1-20톤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월 20톤을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면 현재보다 900원정도 추가 부담하게 됨.
○ 하수처리량이 8,954만톤으로써 인천시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	○ 인천시와 부천시는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3:47(인천시) 부담하였으며 시설운영비도 부담하고 있어 하수도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납부하고 있음.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2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2004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5년 한해에만 인상요인이 94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순손실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 2004년 기준 평균 37퍼센트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요금현실화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하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37퍼센트 인상하고, 업종간 누진 단계를 일반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조정함.(안 별표 1)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중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제31조제3호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직무창안 보상규정”을 “「부천시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5조의2제1항단서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13조중 “부천시수도급수조례”를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조 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5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료요율표(제16조제1항관련)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 정 용	20이하	170	
	20초과~30이하	280	
	30초과	420	
일 반 용	50이하	36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1,000이하	1,100	
	1,000초과	1,470	
대 중 탕 용	1,000이하	290	
	1,000초과~2,000이하	340	
	2,000초과	460	
산 업 용	m ³ 당	320	

주) 단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p>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p> <p>(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p> <p>(2)~(5) (생략)</p> <p>3.·4.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1조(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 부천시 지방공무원 직무창안 보상규정에 의거 심사 시상</p>	<p>-----</p> <p>(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p> <p>(2)~(5)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1조(포상금 지급) -----</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부천시 제안 규칙」 -----</p> <p>-----</p>
--	--

현행			개정안			
[별표 1] 하수도사용료요율표(제16조관련)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6조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인상액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가정용	1 ~ 20	125	가정용	20이하	170	45
	21 ~ 30	190		20초과~30이하	280	90
	31이상	300		30초과	420	120
일반용	1 ~ 50	205	일반용	50이하	360	155
	51 ~ 100	500		50초과~300이하	730	230
	101 ~ 300	750		300초과~1,000이하	1,100	-20
	301 ~ 500	850				250
	501 ~ 1000	900				200
	1001이상	950				520
대중탕용	1 ~ 1000	210	대중탕용	1,000이하	290	80
	1001 ~ 1500	240		1,000초과~2,000이하	340	100
	1501 ~ 2000	280		2,000초과	460	60
	2001이상	330				130
산업용	m ³ 당	225	산업용	m ³ 당	320	95